



무허가축사 적법화 자금 신청안내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중, 500억원은 축산농가가 적법화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이신용조사 등 일부 보증조건을 완화하여 농신보 특례보증*도 적용한다.

* 농신보 특례보증은 정부정책, 경영희생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증조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제도

농신보 특례 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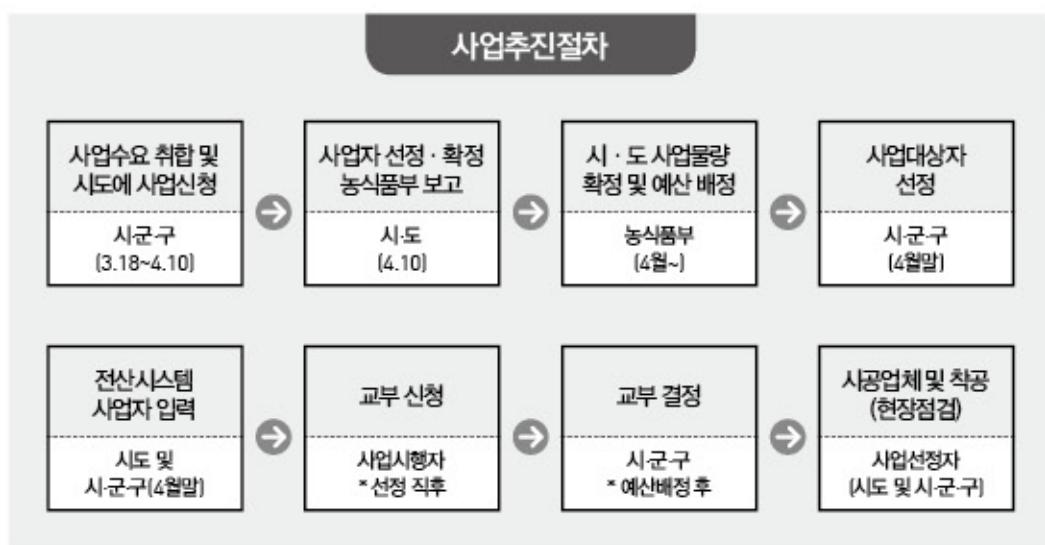
- ❶ (특례보증 한도) 농가당 2천만원, 총액 500억원 한도
- ❷ (운용기간) '19.9.27일(적법화 추가 이행기한)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 적법화 이행기한 추가연장 등 필요시 심의회 의결을 통해 연장 가능
- ❸ (신용조사 방법) 간이신용조사(개인CSS 미적용*)
 - * 연체여부 등 필수사항만 체크리스트로 심사하여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가능
- ❹ (부분보증비율) 농신보 부분보증비율 상향(현행 85% → 95%)
- ❺ (시설특약) 가설건축물(축사)의 '시설자금 특약'을 탄력적으로 운용
 - * 시설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확정 일자부 양도담보권 설정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올해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는 심정으로 꼼꼼히 챙기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자금지원 사항은 축산농가가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 지자체, 지역축협이 협력하여 신속하게 추진 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내에 별도 배정된 500억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공고(3.18) △지자체 사업수요 조사(3.18~4.10 지자체) △지자체별 사업대상 확정(4월말) △자금배정(4월말) 등의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고는 162개 지자체와 139개 지역축협 홈페이지를 통해 3월 18일부터 진행한다.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 축산부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작성해 4.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4월말에 선정한다.

* 신청대상자는 9.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단, 적법화 완료농가는 대상에서 제외함)



정부는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5개부처* 장관명의 합동서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19.1) 한 바 있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16개 위반유형별 적법화 추진방법 운영메뉴얼을 제작·보급(19.2)하여 지자체·축산농가에게 적법화 절차를 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했다.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업무협약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실무 T/F***를 구성(19.2), 측량·설계 등 신속한 행정절차가 이뤄지도록 협업체계도 구축했다. 또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내에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축산농가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독려 안내문'도 발송(19.2)했다.

*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산림청

***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건축사협회,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축산환경관리원

농식품부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최대한 적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단체의 역량과 지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시·군별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점검하고, 추진율이 낮은 지자체는 1:1 지역전담제* 운영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간다.

* 농식품부+지역축협이 2인 1조로 구성, 적법화 추진이 부진한 지자체 전담 지정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기에 때문에 적법화가 진행되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농가별 위반유형,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하고, 지자체와 지역축협이 협력하여 농가별 맞춤형 현장컨설팅 등 선제적으로 지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현장에서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간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500억 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한 만큼, 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게 당부했다.



붙임 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특례적용 방안

(현황)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필요한 정책자금(시설자금)을 지원** 중

* '19년 예산 1,787억원(이차보전 650억원 포함), 융자 80%(5년 가치, 10년 균등분할상환)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설개보수비, 설계·측량비 등 지원

(애로사항) 신용도가 높거나 담보능력이 있는 농가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혜농가가 한정적

- 영세·소규모 축산농가는 담보 부족 등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운 상황

(개선방안) 영세한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정책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이신용조사 등 일부 보증조건을 완화하여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붙임 2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시행개요

(사업대상자)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 받은 농가(단, 원료농가제외)

- (일반지역) 2013년 2월 20일 이전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제한구역 내 축사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이면서 2013년 2월 20일 이전 농가

(자금의 사용용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비용 지원

- 측량비, 설계비, 철거비, 시설개·보수비, 퇴비사신축 등

(사업물량)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에서 500억원 별도 배정

- 농가당 2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

(사업 신청부서) 시·군·구 축산부서

(지원형태) 중소규모 농가 대상으로 융자 80%(연 1%, 5년거치 10년상환), 자부담 20%

- 사업기간은 '19.9.27일(적법화 추가 이행기한)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적법화 이행기한 추가연장 등 필요시 심의회 의결을 통해 연장 가능

(농신보 특례보증) 2천만원 이하 지원자금에 대해 최대 95%까지 신용조사를 완화*하여 보증지원하고, 잔여 5%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부담

* 필수사항만 체크하는 간이신용조사, 대출금융기관에서 보증심사 하는 위탁보증 적용

붙임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관련 용어 설명

간이신용조사: 연체유무, 신용관리대상자 등재여부, 주택·주사업장 권리침해 여부 등 필수사항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심사하는 신용조사방식

개인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농신보·대외신용평가등급을 결합하여 보증신청인의 신용을 평가, 보증금액을 결정하는 시스템

확정일자부 양도담보권: 양도담보권이란 담보물의 소유권 그 자체를 채권자에 이전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지만, 변제하면 그 소유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권리로서, 양도담보 계약서에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의 확정일자부에 따른 일련번호와 확정일자가 기재된 권리